#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58

발의연월일: 2022. 6. 17.

발 의 자:김민석·강득구·고영인

박성준 • 양이원영 • 양정숙

오영환 • 이원욱 • 최연숙

최혜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생산량 증산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범위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율을 최대 100

분의 70까지 상향하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혂 행 개 아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②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 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 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 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100분의 7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 <u>다만, 전쟁이나</u> 대규모 수 있다. <단서 신설>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 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국 회의 승인을 얻은 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
	<u>다.</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